

전주지방법원 2021. 4. 7 선고 2020가단1865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유병연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민아람

피 고 B

변론 종결 2021. 3. 10

판결 선고 2021. 4. 7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C과 피고 사이에 2019. 5. 24.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C에게 전주지방법원 등기과 2019. 5. 27. 접수 4989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D 주식회사는 2015. 6. 9. C에게 1,000만 원을 변제기 2020. 6. 9.” 이자 및 연체 이자 연 34.894%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D 주식회사는 2015. 12. 9. E 주식회사에게 C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다.

E 주식회사는 2018. 10. 26. 원고에게 C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고, C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나. 주식회사 F은 2018. 1. 5. C에게 1,000만 원을 변제기 2021. 1. 5., 이자 및 연체 이자 연 27. 9% 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주식회사 F은 2019. 1. 25. 원고에게 C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하고, C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주식회사 G는 2018. 4. 16. C에게 1,000만 원을 변제기 2023. 4. 16., 이자 및 연 체이자 24%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주식회사 G는 2019. 5. 29. 원고에게 C의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하고, C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C은 2019. 5. 2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9. 5. 24.자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주문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이 사건 매매 당시 C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채무를 제외하고도 이 사건 양수금채무를 포함하여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고,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며,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매매 당시 C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은바, C이 무자력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피고의 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2,500만 원에 매수하되 매매대금의 지급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채무 및 가압류채무를 피고가 인수하는 것으로 같음하였고, 피고 앞으로 등기를 이전받은 후부터 근저당권자에게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여 왔는바,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보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성실

별지